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신자 :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안내

1.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률 제21238호(2025.12.23. 일부개정)「의료법」제18조의2 관련입니다.

3. 상기 법률 개정에 따라, 2026년 12월 24일부터 의사 및 치과의사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직접조제하는 경우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정보 확인 의무가 시행 예정입니다.

4. 이에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 안내 등 협조 요청드립니다.

붙임 1.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 안내 1부
2. 마약류 DUR 의무화 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의 응답(FAQ) 1부. 끝.

건 강 보 험 심 사 평 가 원 장

수신자 대한의사협회(1068202511), 대한치과의사협회(2188201076)

결재	담당 **나지현**	팀장 **최현민**	부장 **연가**	실장	전결11/04 **임상희**

협조

시행 DUR관리부-2444 (2026.11.04.) 접수
우 2646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 www.hira.or.kr
전화 033-739-1703 전송 033-811-7375 /jihyeon23@hira.or.kr / 비공개(5)